



## 뉴욕시교육청

조엘 I. 클라인  
교육감

안드레스 알론조  
교육 및 학습 부교육감

## 학부모 권리 및 의무 조항

2006년 8월

*Judith K. Dean*, 수석 디렉터  
학부모 참여 담당실  
뉴욕시교육청  
49 Chambers Street, Room 503  
New York, NY 10007

212-374-2323 ☎  
212-374-0076 (팩스)

뉴욕시교육청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스승은 학부모님이라는 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간의 확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각 아동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법적 보호자, 학생의 부모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는 교육의 동반자로서 특정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 **학부모님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 **자녀를 무료로 공립학교에 재학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공립학교의 무료 교육은 모든 어린이에게 보장된 기본 권리입니다.

#### **학부모님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의 출생지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치원에서 21세까지 무상으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도록 할 권리.
2. 장애아인 경우, 평가를 통해 특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3세부터 21세까지 무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
3. 자녀가 영어학습학생(English Language Learner)인 경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권리.
4. 자녀가 교육청이 매년 채택하는 학교 일정과 교육감 규정(Chancellor's Regulations)에 따라 모든 수업 일정을 이수하도록 할 권리.
5. 자녀가 인종 차별, 부당한 대우, 편견이 없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할 권리.
6. 자녀가 교육청의 학생 권리와 의무 조항(Bill of Student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명시된 모든 자격을 부여받도록 할 권리.

####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뉴욕시교육청과 산하 학교들은 학부모님에게 교육 프로그램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학부모님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학교 시스템에 기록된 교육 서비스 관련 최신 정보, 해당 서비스 자격 요건 및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예: 교통, 급식 서비스, 보건 서비스, 영어학습학생 수업, 치료 교육, 특수 교육 등등)
2. 교육 프로그램, 출석 및 품행과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기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자녀의 학업 성취도 평가에 사용될 성적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자녀의 수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5.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밀 유지를 보장받을 권리.
6.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검토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지정한 교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 기록의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 기록을 외부 기관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상급 학교 및 모병 담당 기관에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할 권리.
7. 학교, 학군 및 교육구와 학부모 상담을 요구하는 모든 정책 및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8. 교육감 규정 A-663 에 따라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요청하여 제공받거나 교육청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하여 언어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

###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

학부모님은 자녀의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모든 학교 직원으로부터 예우 받을 권리,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 출신국, 성별, 연령, 민족적 배경, 외국인 신분, 시민권 지위, 결혼 상태,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및 경제력과 상관 없이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권리.
2. 교사 및 교직원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자녀의 학습 진전, 사회성 및 품행상의 개선에 관한 염려와 관심 사항을 상의할 수 있는 권리.
3. 상호 합의된 시간에 자녀의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방문할 수 있는 권리.
4. 학교에서 자녀의 학습 진전 상황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학부모 교사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자녀의 학업 및 품행에 대해 통보받을 권리.
6.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교 지도팀에 참가하도록 권유 받고 팀의 업무나 교육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협조받을 수 있는 권리.
7. 자녀와 관련된 심의, 회의, 인터뷰 및 기타 회의에 기존 절차에 따라 친구, 조연자 또는 통역사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
8. 학부모님이 청각 장애인일 경우, 자녀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또는 규율에 관련한 모든 회의 또는 활동에 참여할 때 사전 서면요청을 하면 수화통역사를 제공받을 권리. 수화통역사 제공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적절한 대체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9. 학교 직원들이 학부모 교사 회의, 학교 개방 주간, 학부모회 통지문 등과 같은 중요한 통지문을 학부모님에게 제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할 권리.
10.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 없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협의회 또는 학부모 교사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

11. 자녀의 학교 입학시 또는 추후에 요청할 경우, “학부모 권리 및 의무 조항”, “학생 권리 및 의무 조항”, 규율규정(Discipline Code) 등의 사본을 제공받을 권리.
12. 학교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권리.
13. 교육감 및 교육청에서 설립한 학부모 자문 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14. 지역 또는 뉴욕시 교육 위원회에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경우, 후보로 출마할 권리, 또는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의 학부모협의회나 학부모교사협의회회의 회장, 서기, 또는 재무 부장의 직을 맡고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
15. 공개회의 법(Open Meeting Law)인 “햇볕 법률” (Sunshine Law)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되는 지역 교육 위원회와 교육정책 패널에서 주최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
16. 지역 교육 위원회와 교육정책 패널이 주최하는 공개회의에서 기존 절차에 따라 발언할 권리.

### 항의 및 이의제기에 관한 권리

학부모님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항의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다음의 권리가 있습니다.**

1. 자녀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사항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자녀의 사생활 보호권에 위배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감 규정 A-820 에 따라 수정을 요청할 권리.
2. 자신 또는 자녀의 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결정에 대해 해당 절차를 따라 항의를 하거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모든 학부모님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학습할 준비가 된 상태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
2. 지각이나 결석 없이 자녀를 충실히 학교에 출석시킬 의무.
3. 학교 생활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숙제와 학습 진척 보고서를 살펴보고 교직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자녀의 학교 숙제, 진전 상황, 학교 생활 관련 문제들에 대해 인지해야 할 의무.
4. 자녀의 학습 진전과 관련해 자녀의 교사 및 교장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유지할 의무.
5. 학교의 연락에 응답할 의무.
6. 자녀의 학교에서 참석을 요청하는 모든 모임 및 회의에 참석할 의무.
7. 모든 교직원에게 존중과 예의를 갖추어 대해야 하는 의무.

**학부모님은 또한 다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 자녀가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습 지원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할 책임.
2.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습득 및 가치관 확립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에서 재교육시킬 책임.
3.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시간, 기술, 자원을 제공할 책임.
4. 교육과 관련된 의사 결정 참여권을 부여하는 학교 및 지역 사회 프로그램에 참가할 책임.
5. 학교의 학부모협의회 또는 학부모교사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원이 될 책임.
6. 학교에서 기대하는 수준의 과제 수행, 출석 및 품행에 대해 자녀에게 책임을 부여. 타인의 물건, 안전 및 권리를 존중하도록 가르칠 책임.